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제147호

기획특집

올바른 언론문화를 위한 시정권고

인터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하철용 상임조정위원

2012.

9

CONTENTS

2012년 9월. 제147호

04



07



기획특집

03 올바른 언론문화를 위한 시정권고

인터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하철용 상임조정위원

04 “의료분쟁,
의료중재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원마당

06 복싱은 나의 힘

인턴십 프로그램 수료기

07 언론분쟁의 궁금증을 풀어준
인턴십 프로그램

기고

08 초상권과 알권리는 조화를 이루어야

이런얘기 저런얘기

09 손바닥 위 클라우드 세상

판례토크

10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 경계는 어디인가?

이용재의 잡문 노트

11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와
미식축구의 이해

12 위원동정

13 위원회 소식

14 조정중재사례 소개 및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언론피해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언론사, 대학, 기업, 공공관 등을 대상으로 언론보도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언론문화를 위한 시정권고

언론에서 성폭력 사건을 전하면서 피해자의 주소 등을 나타내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다면 피해 당사자나 가족들의 심적 고통은 과연 어떠할까? 과거에는 이런 기사가 자주 눈에 띄었지만, 지금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결과는 언론풍토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며, 여기에 위원회의 시정권고가 많은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위원회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등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공개 ▲범죄 피의자, 피고인의 신원공개 ▲특정강력범죄의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의 신원공개 ▲마약의 명칭,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방법 등의 상세보도 ▲자살자 신원공개, 자살방법 상세묘사 등 인권침해나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침해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31년간 언론에 총 6,638건의 시정권고를 했으며, 이 중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가 2,100건(31.6%), 마약 용량·용법 등 공개가 1,176건(17.7%), 특정강력범죄의 목격자·신고자·피해자 신원공개가 1,041건(15.7%), 자살 관련 보도가 855건(12.9%),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가 721건(10.9%) 등으로 나타났다. 위

원회의 지속적인 시정권고 활동으로 성폭력 피해자와 특정강력범죄의 목격자·신고자·피해자 신원공개에 대해서는 위반 사례가 이전에 비해 급감했다.

혹자는 시정권고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위원회가 시정권고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언론인과 심층인터뷰를 한 결과, 언론인들은 대체로 시정권고가 강제성이 없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내용이 타당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를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하려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현장 기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해 간과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주의를 갖도록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시정권고 개선과 관련하여 시정권고심의기준을 보다 더 구체화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에 대해 일선 기자들을 상대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정권고가 잘못을 전제로 결정된다거나 권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므로 다른 용어로 순화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위원회의 시정권고는 언론에 대한 감시·통제가 아니라 올바른 언론문화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시정권고를 통해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이다.

•글: 이재범(홍보팀 차장)

“의료분쟁, 의료중재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하철용 상임조정위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1988년부터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추진하여 23년 만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2012년 4월 8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오랜 법조인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중재원에서 의료분쟁 조정업무를 맡고 있는 하철용 상임조정위원을 만났다.

의료중재원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이 얼마나 되며, 의료중재원을 설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 한해 발생하는 의료분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고, 대략 3만건 가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수치는 의료기관별 의료분쟁 발생건수를 병원급 6천여건, 의원급 6천여건, 한방의료기관 천여건, 치과의료기관 6천여건 등 약 2만건으로 보고, 여기에 최근의 증가 추세를 감안한 것입니다.

그간 의료분쟁이 증가하면서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소송기간의 장기화와 소송비용의 과다로 환자측의 부담이 크고, 의료인의 방어진료로 의료비 상승은 물론 의료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았던 것이지요. 이제 의료중재원이 설립됨에 따라 환자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배상받을 수 있게 됐고,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피해를 입은 환자가 의료중재원을 이용할 경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료중재원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상담은 물론 전문상담도 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궁금한 것을 상담 부분 해소하고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이어 「의료사고감정단」에서 의료사고의 사실조사, 과실유무, 후유장애 등을 감정하지요. 감정결과가 나오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조정절차 진행 중에 합의를 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절차를 종료하게 됩니다. 양측이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인데, 그 때에는 양측의 사정을 잘 헤아려 조정결정을 하게 되지요. 조정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이 성립됩니다.

다. 그 밖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있는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미리 합의하고 중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리를 거쳐 중재판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의료중재원의 절차가 언론중재위원회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의료분쟁은 전문적이고 환자와 의사의 갈등이 첨예한 분야라 조정을 하기가 다른 분야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료분쟁은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어떤 증상에 대하여 어떠한 치료를 하여야 할 것인가, 그러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의료지식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등 그 판단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의료분쟁은 금전상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감정적 요인이 매우 강하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로서는 통상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모든 것을 맡기고 치료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가 환자를 소홀히 한 때문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배신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의사측은 최선을 다하여 치료하여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환자측이 형사고소를 해 수사기관에 불러 다니고, 거기다가 환자측에서 실력행사라도 하면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정절차에서는 먼저 쌍방의 감정을 잘 파악하여 누그러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분쟁의 조정에서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뭐니 뭐니 해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환자측은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요. 조정위원이 의사인 경우에는 팔이 안으로 굽지나 않을까 걱정도 합니다. 의사측도 환자측이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친 양보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지요.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조정보다는 소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분쟁해결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고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고 편리한 분쟁해결제도인 조정은, 판결이 가지는 속성인 ‘전부 아니면 전부’라는 식의, 때로는 구체적 타당성에 어긋날 수도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과거의 잘못을 판단하는 작업이라면, 조정은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창조적으로 찾아내는 일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것이지요. 분쟁당사자에게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까?

조정이 필요하고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말하여 주는 경우는, 오랜 법정투쟁 끝에 얻은 승소 판결이 ‘상처뿐인 영광’에 지나지 않을 때이겠지요.

법조인으로 살아오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거나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어느 시인은 사람과 사랑, 그리고 삶의 어원이 한 군데서 나왔다고 하더군요. 받침 하나만 바꾸면 사람과 사랑이 왔다 갔다 하고, 모음 하나 빼면 사람이 삶이 된다고 하면서요. 저는 사람의 사람에 대한 사랑, 그것이 삶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법조인 역시 사람에 대한 사랑, 보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데서 보람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중재원의 일도 어려운 처지에 빠진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보람도 보람이지만 현재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981년에 창립된 언론중재위원회가 벌써 31살 된 듬직한 청년으로 성장했군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언론보도로 문제가 생길 경우, 우선 ‘언론중재위원회’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보도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달려갈 데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금까지 쌓아 온 신뢰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가 그동안 축적한 조정기법 등 노하우를 다른 조정기관과 공유하면 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설 조정기관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잘 부탁드립니다.

• 진행 / 이진숙(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 이재범(홍보팀 차장)



이 세 라
접수상담팀

복싱은 나의 힘



진부한 이야기지만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다. 벌써 입사 9개월차... 법학 공부만 했던 내가 작년 12월 입사 후 통계라는 낯선 업무를 맡으면서 정신없는 연말, 연초를 보냈다. 울고 웃으며 통계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되었고 많은 선배들의 도움과 격려로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 같다. 회사라는 조직과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회사원의 특성상 운동이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운동을 해볼까 고민하던 중 복싱이라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시영’이라는 배우가 아마추어 복싱 선수로서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하며 복싱 붐이 일기도 했고,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 또 스트레스 해소에 복싱이 효과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에 당장 복싱체육관에 등록을 했다. 사실 평소 복싱에 대해 주먹질에 불과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체육관에서 원투스트레이트 및 각종 공격기술을 배우면서 이런 생각이 깨지기 시작했다. 복싱의 공격기술은 크게 잭, 스트레이트, 훅, 어퍼 등의 네 가지이다.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의 기술을 완벽히 익히는 데에는 몇 년씩 걸린다고 한다. 처음 배웠던 기술은 잭과 원투스트레이트였다. 제자리에서 계속 뛰면서 팔을 앞으로 뻗는 단순한 기술이었지만 거울로 보이는 내 모습이 엉성하고 어색해 웃음이 나왔다. 비록 엄청난 체력소모로 나중엔 미소가 썩소로 변했지만 말이다.

내가 가장 즐겁게 했던 훈련은 매서드 복싱(Method Boxing)이었다. 매서드 복싱이란 약속대련을 말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일정한 루틴 하에 서로 공방을 교환하는 것이다. 기술이 향상될수록 가벼운 형태의 자유 공방을 교환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자율적인 훈련의 경우 조금만 힘들면 앉아서 쉬는 나의 습성 때문에 운동량이 많지 않았는데, 매서드 복싱을 할 때에는 상대방과 계속해서 공방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임의로 쉴 수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운동량도 크게 늘었다. 초심자였던 나는 ‘잭3개-원투-원투원-원투원투’ 순의 기본적인 루틴으로 연습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주먹으로 친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일부러 살살 치기도 하고 치고 나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예의가 아닐뿐더러 실력 향상에 방해가 된다는 코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지한 자세로 훈련에 임하게 되었다.



복싱은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더불어 건강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 또한 취직이라는 인생의 장애물 한 개를 넘어 목표의식 부재에 시달려온 나의 일상에 활력소가 되어주었다. 덤으로 운동 후 관원들과 맥주 한 잔을 하는 여유와 꾸준히 운동을 하며 하루를 성실히 채워나가는 좋은 사람들을 얻게 됐다. 어떤 스포츠든 스포츠 활동이라는 것은 몸을 먼저 자극시키고 몸의 성장이 마음까지 이어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격투기 같이 신체 전체를 활용하여 몸과 몸이 부딪히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즐기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 같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첨단 기기의 보급으로 혼자 보내는 여가 시간이 많아진 요즘이지만 격투기 같은 운동을 취미로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변화가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이다. 🏆



언론분쟁의 궁금증을 풀어준 인턴십 프로그램



조 상 욱

광명고 3학년
광명시 청소년신문 '청신호' 기자

저는 아마 처음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두 번 참여한 학생일 것입니다. 작년 12월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겨울방학 동안 인턴십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평소에도 이러한 활동들에 관심이 많던 저는 참가 신청을 하게 되었고, 1월 27일 언론중재위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턴십 강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마치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하면 배울 법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칫 딱딱할 수도 있을 잘못된 언론피해에 관한 이야기와 해결방안들을 강사님께서서는 유머를 곁들여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어려울 수도 있는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와 같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들으니 더 이해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접수상담팀에서 전화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언론피해 접수를 받고 계시는 직원 분들의 모습을 보고 바쁘겠지만 보람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심리실을 참관하면서는 이곳에서 이루어진 조정과 중재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듣고 작은 공간이지만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의미가 큰 공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때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 듣고 보니 제가 모르고 있었던 정보들과 함께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고, 이런 곳이 있다,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을 제가 기자로 소속되어 있는 신문인 청신호(발행처: 광명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 광명시 중·고등학생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난 뒤 홍보팀의 담당자분을 만나볼 수 있었고, 2월 17일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이진숙 홍보팀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는 일 중 특히 조정과 중재의 차이에 대해서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사를 작성하여 3월에

보도가 나간 뒤에도 언론중재위원회와 저, 청신호와의 관계는 8월까지 이어졌습니다. 2월 인터뷰 때 올해 청신호 신입기자들이 뽑히는 여름방학 중에, 이번엔 청신호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갖기로 약속했고 8월 6일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두 번 참여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날 같이 동행한 기자들 중에는 중학생도 있었습니다. 강의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물어보니 강의내용을 잘 이해했다고 하며 만족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인턴십 프로그램은 학생 수준에 맞춰진 강의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녀오면 언론중재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 꿈은 당시 방송기자였지만 부끄럽게도 이런 곳이 있는지, 이런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연히 법원에서만 언론분쟁을 해결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나 국민들이 아직까지 이렇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언론중재위원회를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신호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인터뷰 기사를 썼던 것을 가장 큰 기억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홍보대행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되기로 진로를 변경했지만 이 직업 역시 언론대행을 중요한 업무로 삼기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들었던 이 내용들과 인턴십을 두 번 참여했던 일, 인터뷰를 진행할 때의 경험 전부가 앞으로 제가 직업세계에 나아가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언론중재위원회를 알려주겠습니다. 🍌



성연재
연합뉴스 사진부 차장

초상권과 알권리는 조화를 이루어야



경기한파에 세상이 각박하다보니 사람들의 얼굴 인식도 팍팍해졌나보다. 이제는 누구나 초상권이라는 말에 더 이상 생소해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보조데스크를 하는 나로서는 초상권이라는 이 세글자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아니 나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신문사 데스크들도 마찬가지리라. 언제부터 신문사, 통신사 사진부 데스크는 매일처럼 초상권이라는 지뢰를 밟지나 않을까 가슴 졸이며 일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나 통신사에 근무하다 보니 사진이 캡션과 함께 올라가면 바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 올라가 초상권을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불려가는 일도 특히 잦다. 불과 며칠 전에도 한 신참 기자에게 촬영한 사진에 자신의 옆얼굴이 나왔다고 투덜거리는 전화가 왔는데, 이런 경우 초 긴장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정말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부장이 위원회를 다녀와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부서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진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사건이 10만원 상당의 영화관람권으로 무마됐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사진에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콩알만 하게 찍힌 그 사람의 옆얼굴이 찍혀 있었다. 허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매일 업무에 시달리는 언론사 데스크들은 복잡한 송사에 시달릴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2007년의 어느 겨울이었을 것이다. 추운 겨울 스케치를 하려고 카메라를 메고 종로 길거리에서 추위에 종종걸음치는 사람들을 찍고 있었다. 그리고 초상권이라는 줄 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던 나는 그 줄타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일일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사진을 보도해도 되겠느냐는 동의를 구했다. 그러기를 한시간이 지나고 동의를 구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20여 명이 넘어가는 등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런 스케치 사진은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사안을 취재한 경우에도 결국 초상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조정신청 과정에서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사진기자가 위원회에 더 이상 불려 다니는 것이 번거로워 위원회의 조정엔 응하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 사망 시 청계천 앞길에서 호위를 들고 서 있는 시민을 찍은 사진과 관련해서 지난해 위원회에 손해배상이 청구된 적이 있었다. 연합뉴스의 최 모 사진기자는 얼굴을 머물러로 감고 있는 시민이 호위를 읽고 있는 장면을 찍어서 발행을 했다. 그 기자는 “그 정도면 충분히 얼굴을 가렸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시민은 그 기자의 사진을 가지고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결국 백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김정일의 사망이라는 한반도를 좌지우지할 중요한 사안인데 그 복잡하고 바쁜 시점에 어떻게 사람들이 호위를 읽고 있는 장면을 동의를 얻어서 낼 수 있단 말인가? 자꾸만 이렇게 초상권만을 보호하려 든다면 사진기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의 알권리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라도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는 피사체가 신문을 들고 있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사진을 실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상해보라. 주요한 사안에 나오는 사진은 거의 얼굴이 없는 사진이 될 것이고 경제면에서 모델을 동원해 쓰는 사진이나 언론에 얼굴을 내밀고 싶어 하는 정치인들 사진들만 신문에서 보게 될 것이다.

필자도 초상권 시비에 시달리기 원치 않아서 가능한 사람 얼굴이 안 보이는 뒤통수만을 찍기 시작한 것이 몇 년 된다는 점을 고백한다. 사진기자는 사진 속의 얼굴이나 표정으로 독자에게 현장을 전달한다. 물론 억울한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결핍하면 한 건 잡았다는 식의 초상권 피해 청구와 진짜 피해는 가려져야 한다고 본다. 🇰🇷



손바닥 위 클라우드 세상

박 천 서 총무팀

최근에 “클라우드(Cloud)”란 단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자주 들을 것이다. 하지만 단어는 익숙한데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사실 기술적으로 파고든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쉽게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클라우드란 구름(Cloud)에서 유래된 말로 형태가 없는 존재를 뜻하는 말이다. 이런 형태가 없는 자원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웹을 통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한다.

쉬운 예를 들어 사용자들은 지금까지 각종 자료들을 외장형 하드나 USB와 같은 플래시 메모리에 옮겨서 보관하여 사용했다. 이 방법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지만 외장 저장 매체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했으며 공공장소에서는 보안의 위험도 뒤따르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고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하나이다.

많이 사용하고 익숙한 클라우드 서비스로는 Apple의 아이클라우드, SKT의 T클라우드, Naver의 N드

라이브, Daum의 다음클라우드 등이 있다. 보통 무료 저장용량을 50GB에서 많게는 수백GB까지 제공하고 있다.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기능은 역시 문서나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와 연동이 가능하며 PC에서 곧바로 클라우드 저장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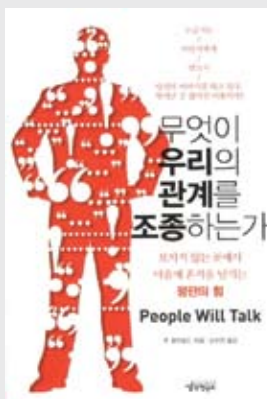
간에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그리고 PC, 태블릿, 스마트폰, 노트북 등 대부분의 스마트기기와 클라우드간 자동 동기화 기능도 제공하며 지정된 사용자끼리 클라우드 내에 있는 폴더공유 또한 가능하다. 이는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 촬영 즉시 자동으로 클라우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며 지인들에게 자동으로 폴더공유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스마트기기 대중화의 성공으로 더욱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클라우드 서비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잠자는 주머니속의 스마트기기가 아닌 정말로 똑똑한 나만의 스마트기기가 될 것이다.

BOOK 이달의 책

무엇이 우리의 관계를 조종하는가

존 휘트필드 지음 | 생각연구소 | 392페이지



2004년 'Review of General Psychology'에 실린 한 논문에는 “성인 대화의 60% 이상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얘기”라는 추정치가 실려 있다고 한다. 우리는 매일 상당 시간을 남의 뒷담화를 하고 있는 셈!

집단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매일 타인의 평판을 생성하고 이용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평판도 만들어간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관계의 핵심인 '평판'을 진화생물학, 심리학, 행동경제학, 신경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설명하고 있다. 인간, 동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실험을 통해서 뒷담화와 소문으로 대표되는 평판의 숨겨진 순기능과 역기능을 짚어낸다.

저자는 사회적 네트워크 및 소문에 관한 연구를 보면 평판이 성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지적한다. 우리의 성격은 우리의 것이지만, 우리의 평판은 다른 사람의 것! 사람들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고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제하기 위해 평판을 활용하고 있음을 깨우쳐준다. 나아가 익명성, 사생활 파괴로 대변되는 온라인 사회의 평판에 관해 진단하면서 집단과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국제사회로까지 평판의 범주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시사한다.



양재규
정책연구팀 팀장, 변호사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 경계는 어디인가?

8, 31, 49. 무슨 숫자들일까. 90년대와 2000년대 우리 법원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했던 대상 집단들의 크기다. 8은 기무사 현역장성의 숫자이고, 31은 대전 지역 검사의 숫자이며, 49는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의 숫자다. 10년 전만 해도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집단의 크기는 기껏해야 두 자리 숫자에 그쳤다. 여기에 295라는 세 자리 숫자를 새로 추가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가 있는 날 저녁,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는 대회 관계자 및 토론에 참여한 대학생 2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회식 도중 한 국회의원은 아나운서를 지망한다는 여학생에게 조언삼아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〇〇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고 말했다. 사건 당시의 분위기나 장소 등을 감안하면, 별 생각 없이 가볍게 한 말일 수 있다. 그런데 문제의 발언이 같은 달 20일자 모 일간지에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래?> 제하의 기사로 보도되면서부터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게 된다. 마침내, 한국아나운서협회(남자 265명, 여자 295명 등록) 회원인 여성 아나운서 154명이 발언의 당사자인 국회의원을 상대로 모욕죄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사건 초기, 모욕죄 성립 여부를 두고 세간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특히, 국회의원 측은 자신은 문제된 것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자신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구성원의 수가 많고 구성원의 변화가능성이 있는 아나운서 일반을 지칭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말하자면, 대상 집단의 크기가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을 부정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예훼손의 성립을 긍정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공중파 아나운서들로 구성된 한국 아나운서 협회에 등록된 회원들로서 등록을 통하여 그 경계가 분명하고, 특정되어 있어 … 피고인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들이라는 집단으로 표시되었고, 한국 아나운서 협회에 등록된 여성 아나운서들의 수가 295명에 이르지만 …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범위 내의 사람들이 이 사건 표현 내용과 피해자들을 연결시킬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들 집단의 개별 구성원, 적어도 한국 아나운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인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성이 있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노529 판결)

이제까지 우리 법원은 집단에 대한 비난이 곧 구성원에 대한 비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소규모인 집단에 한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을 긍정해왔다. 그러다보니 15명이나 25명이나 200명이나 하며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한 선을 긋는 견해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집단의 크기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그 경계선을 295명으로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이러한 방식의 접근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사실 이번 판결 이전에도 13,564명이나 되는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었다(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혔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판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데에는 대상 집단의 크기나 구성원의 수만이 명예훼손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예상이 옳다면, 앞으로 등록이나 신고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그 대상 집단의 경계가 분명하고 또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비록 수백 명이 넘는 다소 큰 규모의 집단이라 하더라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판결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

이용재의 잡문 노트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와 미식축구의 이해

이용재 (칼럼니스트)

미국에서 9월은 미식축구의 달이다. 대학과 프로 양쪽 모두의 시즌이 개막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스피드>로 영원히 기억될 산드라 불록 주연 <블라인드 사이드>가 개봉됐다. 이 영화의 개봉에 은근히 놀랐는데, 우리나라에서 큰 관심이 없는 스포츠인 미식축구(American Football)를 소재로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작인 책은 야구 이야기를 통해 일전에도 소개한 바 있는 <머니볼>의 저자, 마이클 루이스의 베스트셀러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다.

사실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제목조차,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표면적으로 미식축구의 규칙은 아주 간단하다. 직사각형의 경기장을 반으로 나눠 각각 한 팀씩 나눠 가진다. 야구처럼 공격과 수비를 한 선수가 하지 않고, 공격수와 수비수가 따로 있어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한 팀이 공격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팀의 수비수가 그들을 막는다. 상대방 영역의 맨 끝 칸에 공을 가지고 들어 가면 득점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위해 패스, 또는 공을 손에 들고 뛰는 '러닝(running)'으로 전진한다.

공격하는 팀은 네 번의 기회 안에 수비수를 뚫고 10야드(약 9m)를 전진해야만 한다. '쿼터백(Quarterback)'은 공격수를 진두지휘하는 총사령관 역할로, 보호를 위해 쓰는 헬멧에 내장된 교신장치를 통해 코칭스태프와 전략 및 전술에 대한 의사소통을 나누고, 그를 바탕으로 스스로 패스를 할지 아니면 러닝을 전담하는 '러닝백(running back)'에게 공을 넘겨줄지를 결정한다. 영화의 제목인 블라인드 사이드는 쿼터백이 패스를 할 경우 던지는 손 반대편을 일컫는 단어다. 그쪽으로 달려오는 수비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오른손잡이일 경우 왼쪽, 왼손잡이일 경우 반대쪽인 오른쪽으로 접근하는 수비수를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패스 직전 수비수의 습격에 취약해진다.

1985년 11월, 미 전역으로 생중계되는 워싱턴 레드스킨즈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에서 큰 사고가 벌어진다. 자이언츠의 수비수 로렌스 테일러(Lawrence Taylor)가 레드스킨즈의 쿼터백 조 타이스만(Joe Theismann)을 덮쳐 유혈 낭자한 골절상을 입힌 것이다.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미국 전역으로 생중계된 것은 물론, 전성기를 구가하던 조 타이스만은 이 부상으로 인해 그대로 선수 생활을 비극적으로 마감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미식축구에서는 쿼터백의 블라인드 사이드로부터 침입하는 수비수를 막아줄 '태클(Tackle)' 포지션을 강화하기 시작한다. 쿼터백을 덮치기 위해 달려오는 수비수를 제압할 수 있을 만큼 체력 조건이 좋되, 그러한 체력 조건에서 불가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유연성과 빠르기를 갖춘 유망주 발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영화의 주인공 마이클 오어(Michael Oher)는 바로 이러한 체력 조건을 갖춘 유망주이지만 알코올, 마약 중독자

인 어머니를 비롯,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스스로의 잠재력을 알아차릴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 채 유년시절을 보낸다. 이러한 그의 잠재력을 알아본 리 앤과 셴 투오이(Leigh Anne & Sean Tuohy) 부부가 그가 기본이 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한 것은 물론, 이후 가족의 울타리 안에 편입해 미식축구의 간판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4점 만점에 채 1점도 못 넘기던 그는 양부모의 도움 덕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3년간 선수 생활을 한 뒤 볼티모어 레이븐스(Baltimore Ravens)에 1차 지명, 수천 명의 대학 선수들 가운데 스물세 번째로 선택을 받아 작년까지 이후 4년간 전 경기에 태클로 출장하고 있다. 🍌





서울신문에 '정책결정과 도깨비도로 함정' 기고



박남기 위원(광주중재부, 광주교육대 총장)은 8월 13일자 서울신문에 '정책결정과 도깨비도로 함정' 제하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박 위원은 새로운 정책을 입안할 때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을 수용함으로써 도깨비도로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사랑 밤길걷기' 준비위원장 맡아



김형태 위원(대전중재부, 변호사)은 대전생명의전화가 주관하는 '생명사랑 밤길걷기' 행사의 준비위원장으로서 8월 6일 대전역 2층에서 자살예방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국민들에게 생명존중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개최됐다.

미국 오렌지카운티 방문, 한미 법률교류 행사에 참석



위철환 위원(경기중재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7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를 방문해 자매결연을 맺은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협회와 제3차 교류회를 가졌다. 이어 28일에는 한미법률재단이 개최하는 '2012 한미 Law Day 세미나'에 참석해 한미 FTA 이후 증가할 민사소송의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춘천지법 자원봉사단 첫 봉사활동 펼쳐



김형훈 위원(강원중재부,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은 7월 28일 춘천지법 자원봉사단 '봄내 사랑 나누미'의 첫 활동으로 춘천시 소재 밀알재활원을 방문해 배식과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춘천지법은 지난 7월 23일 더욱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소속 법관 및 직원 10여 명이 자원봉사단을 구성했다.

한진만 위원, KBS 이사 선임



한진만 위원(강원중재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언론학계를 대표하여 KBS 이사 후보에 올랐으며, 8월 7일 선임 이사로 임명됐다. KBS 이사로는 9월 1일부터 3년간 활동하게 된다.

'하논분화구 복원 범국민추진위원회' 감사 임명



권병 위원(제주중재부, 변호사)은 8월 3일 '하논분화구 복원 범국민추진위원회'의 감사로 선출됐다. 하논분화구는 5만여 년 동안 퇴적층이 형성돼 기후변화연구의 가치가 있는 희귀 생태환경이며, 복원추진위원회는 하논분화구 복원이 세계자연보전총회의 발의안으로 채택되도록 적극적인 범국민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9월 1일자로 신임 중재위원 16명을 포함해 모두 49명의 중재위원이 위촉됐다. (가나다순)

중 재 부	성 명	경 력 사 항
서울중재부	권 오 승	전 SBS 해설위원
	권 일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 성 희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박 인 협	전 파이낸셜뉴스 상무이사 겸 편집인
	배 준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성 지 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송 정 훈	변호사
	어 경 택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유 의 선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이 영 덕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 재 무	전 뉴시스 편집담당 상무
	임 병 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장 재 윤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장 진 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장 현 우	변호사
	전 세 봉	변호사
	정 상 용	변호사
	정 종 식	변호사
	한 천 수	전 중앙엔터테인먼트&스포츠 대표이사
부산중재부	강 경 철	변호사
	김 봉 수	전 부산MBC 보도국장
	김 상 국	부산지법 부장판사
	한 혜 경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대구중재부	김 정 숙	영남대 국사학과 교수
	장 익 현	변호사
	정 용 달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중재부	강 행 옥	변호사
	박 병 철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주 정 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대전중재부	정 교 순	변호사
	정 정 미	대전지법 부장판사
경기중재부	위 철 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장 준 현	수원지법 부장판사
강원중재부	김 길 소	전 강원일보 논설주간
	김 세 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 형 훈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 택 수	변호사
충북중재부	신 송 현	변호사
	임 성 재	전 청주방송 상무이사
	최 병 준	청주지법 부장판사
전북중재부	김 종 량	전 전북일보 편집국장
	김 창 희	전북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경남중재부	고 규 정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김 진 희	경남대 가정교육학과 교수
	남 부 희	창원대 사학과 겸임교수
	임 영 수	변호사
	장 성 운	전 울산매일 편집국장
제주중재부	강 봉 훈	변호사
	김 재 원	제주대 통역대학원 교수



조정중재사례 소개

명예훼손 사례 1

■ 기사와 무관한 영상 보도,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으로 조정성립

A방송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약을 취소한 소비자를 상대로 부당하게 위약금을 청구한 5개 펜션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이 해당 기사와 무관하게 방송의 배경화면으로 사용됐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담당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정대상 보도 중 신청인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신청인에게 2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했다.

명예훼손 사례 2

■ 보조금 횡령 의혹 보도, 후속보도로 조정성립

B방송사는 신청인이 회계 전반을 관리하며 각종 보고서를 지연 혹은 제출하지 않는 등 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인정돼 면직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신청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판정을 받았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장의 일부를 반영한 후속보도를 게재하기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언론은 소통 매체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가져야’라는 글 잘 읽었습니다. 책임이 없는 언론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관심이 가는 글이었네요. 곧 실시할 대선 때문에 언론의 중립성과 양심이 종종 화두가 되곤 하는데, 동시에 위원회의 중요성도 느끼게 되네요. (이규중)
- ‘판례토크’를 보고 언론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했어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다시는 없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의 노력도 더 커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억울한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오윤정)
- ‘조정중재사례’를 읽으니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재감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언론중재위원회라 하면 생소하게 들리지만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가진 곳이니만큼 더욱 분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언론으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들.. 단순한 돈이 아닌 마음에까지 상처를 입은 사람도 수없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액수가 아닌 마음까지 보듬어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언론중재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김수연)

이제 조정중재도 인터넷으로, 언론중재Eye-Net 서비스!!



언론중재Eye-Net 이란?

- 언론중재Eye-Net은 전자적으로 조정중재를 신청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하는 전자정보시스템입니다.
-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상담, 조정중재신청, 심리준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언론중재Eye-Net을 찾아주세요.

언론중재Eye-Net 이용안내

1. 전자제출

위원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 중 각종 서류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자민원

문고 답하기와 1:1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각종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자송달 확인

위원회에서 전자송달한 각종 통지서, 조정조서, 결정문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나의 전자심리

나의 사건 진행내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고, 진행 중 사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Eye-Net <http://people.pac.or.kr>

공정한 언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 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 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 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과 잡 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 의하여 불공정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등의 게재 또는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려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선거일 : 2012년 12월 19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2년 4월 23일부터
2013년 1월 18일까지 운영됩니다.”



불공정 보도로 인한 선거후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 의결 하여 시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등의 게재 또는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리고, 시정 요구 사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선거후보자와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사건을 심의합니다.

선거기사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나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인용 또는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